

#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안은 경찰청이 매년 시·도 경찰청별로 각종 범죄의 발생 및 검거 건수 등을 공개하고, 행정안전부도 ‘생활안전지도’를 통해 5대 범죄에 관한 통계정보를 공개하는 데 반해,
-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인 각종 생활범죄 발생·검거·예방에 관한 통계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, 동 위원회로 하여금 생활범죄 통계정보를 자치구별로 공개하고 그 예방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사회 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먼저 생활범죄라는 용어의 내용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, 성폭력 및 성매매, 학교폭력, 경범죄, 교통법규 위반으로 정의하였습니다.
- 다음 생활범죄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, 생활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또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생활범죄 및 예방 관련 정보와 이에 바탕한 ‘생활범죄예방지도’의 작성 및 공개 방법,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